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의 수산물 검정 항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명시된 유해물질과 용어를 통일하고 검정항목별 세분화를 통해 일관된 업무수행을 제고하고 다성분에 대한 동시분석 항목의 수수료 규정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수산물 검정 수수료 부담 완화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명시된 유해물질 반영과 용어를 통일하고 검정항목별 세분화(안 [별표 30] 제6호)
- 나. 민원인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유관기관과 형평성에 맞도록 동시분석 가능 항목에 대해 수수료 부과 규정 신설(안 [별표 34] 제6호)
- 다. 검정 항목에 따라 결과 값의 단위기준 유연성을 위해 검정증명서 내 잔류허용기준 “(mg/kg)”단위 삭제(안 [별지 제74호서식])
- 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내 수산물 항목을 추가(안 [별지 제75호서식])
- 마. 시험·검사기관 관련 개정된 법률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조문으로 개정(안 [별표 2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치 예정

라. 기 타 : 1)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의 비고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인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수산가공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별표 30 제6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	검정항목	세부 검정항목
일반성분	가. 일반성분 등	수분, 염분, 산가, 과산화물가, 휘발성염기질소, 히스타민, 아미노산성질소, 전질소(총질소), 일산화탄소 등
	나. 식품첨가물	이산화황, 타르색소, 보존료 등
유해물질	가. 중금속	총수은, 메틸수은, 카드뮴, 납, 총비소, 주석 등
	나. 방사능	요오드(^{131}I), 세슘($^{134}\text{Cs}+^{137}\text{Cs}$)
	다. 미생물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노로바이러스 등
	라. 잔류동물용의약품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옥소린산, 클로람페니콜 등
	마. 독소	마비성 패독, 설사성 패독, 기억상실성 패독, 복어독
	사. 기타물질	벤조피렌, PCBs, 멜라민 등

별표 34 제6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검정항목	세부 검정항목	단위	수수료(원)
일 반 성 분	가. 일반성분 등	수분	1항목	8,000
		염분	1항목	6,000
		산가	1항목	6,000
		과산화물가	1항목	6,000
		일산화탄소	1항목	6,000
		휘발성염기질소	1항목	8,600
		히스타민	1항목	8,600
		아미노산성질소	1항목	26,000
		전질소(총질소)	1항목	26,000
	나. 식품첨가물	이산화황	1항목	43,000
타르색소(허용 외)		1항목	14,400	
보존료(데히드로초산, 소브산, 안식향산 및 그 염류,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 ※ 상기 항목 전체를 1항목으로 한다		1항목	43,000	
보존료(프로피온산)		1항목	43,000	
유 해 물 질	가. 중금속	총수은	1항목	33,000
		메틸수은	1항목	70,000
		주석	1항목	76,700
		납	1항목	76,700
		카드뮴	1항목	76,700
		비소	1항목	76,700
	나. 방사능	요오드(¹³¹ I)	1항목	50,000
		세슘(¹³⁴ CS+ ¹³⁷ CS)	1항목	50,000
	다. 미생물	대장균 ※ 건조필름법의 경우, 대장균군과 동시분석 가능	1항목	13,000
		대장균군 ※ 건조필름법의 경우, 대장균과 동시분석 가능	1항목	13,000
		세균수	1항목	13,000
		장염비브리오	1항목	15,000
		살모넬라	1항목	15,000
		리스테리아	1항목	15,000
		황색포도상구균	1항목	15,000
		노로바이러스	1항목	100,000
	라. 잔류동물용 의약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동물용의약품	1항목	40,000
	마. 독소	마비성 패독	1항목	53,100
		설사성 패독	1항목	53,100
		기억상실성 패독	1항목	40,000
		복어독	1항목	53,100
	사. 기타물질	PCBs	1항목	114,800
		벤조피렌	1항목	122,000
		멜라민	1항목	45,100
비고				
1.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검정항목의 검정수수료는 비슷한 세부 검정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 시 마다 4,500원을 추가함				

별지 제7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제 호				
(Certificate Number:)				
검 정 증 명 서 (Certificate of Analysis)				
신청인 (Applicant)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Name/Organization)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I.D. number)
	주소(Address)			전화번호(Tel.):
검정 목적 (Analytical Purpose)				
검정 품목 (Sample Description)				
검정 항목 (Analyzed Items)				
시료 점수 및 중량 (Quantity of Samples)				
검정 기간 (Date of Test)				
검정 방법 (Analytical Method used)				
검정 결과 (Analytical Results)	결과 (Results)	단위 (Unit)	잔류허용기준 (MRL)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수출국명 (Exporting country)
	검토의견 (Remarks)			
※ 농가에서 제출한 농약사용기록대장을 확인하였음(수출용에 한함) [Confirmed the pesticide use records submitted by farms(Only for export)]				
확인 (Affirmation)	작성자(Tested by Name) 성 명: (서명)		검토자(Approved by Name) 성 명: (서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검정한 시료에 대한 검정 성적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samples have been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98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Act, and Article 12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년 월 일 Date of Issue: day. month. year				
○ ○ ○ 장			직인	
예시) Chief of 000 Provincial Office [seal]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검정기관 []지정
[]지정 갱신 신청서

* []란에 V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업무 범위	분 야	농산물 등		수산물		
		[] 품위·품질·일반성분 검정 [] 무기성분·유해물질 검정	[] 일반성분	[] 유해물질		
	구 분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 농지(토양) [] 용수(하천수·호소수) [] 용수(먹는물·먹는샘물)				
		[] 자재(비료·축분· 깔짚 등) [] 수산물				
검정 항목	검정 항목	[] 품위 [] 발아율 [] 도정률 [] 품질 [] 일반성분	[] 무기성분 [] 유해 중금속 [] 잔류농약 [] 곰팡이 독소 [] 항생물질 [] 방사능 [] 병원성 미생물	[] 일반성분 등 [] 식품첨가물	[] 중금속 [] 방사능 [] 미생물 [] 잔류동물용의약품 [] 독소 [] 기타물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 제13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검정기관 지정 [] 검정기관 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지정신청 시)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검정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각 1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갱신신청 시)	1.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 2.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